####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

제정 2011. 2. 28 조례 제1140호 일부개정 2011. 11. 3 조례 제1190호(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) 일부개정 2018. 5. 14 조례 제1823호 일부개정 2020. 2. 28 조례 제2011호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 의원이 소속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·의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의원연구단체"란 용인시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의 특정분야 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·개발 등을 목적으로 용인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.
- 2. "연구활동비"란 정책의 연구·개발을 위한 공청회·간담회·현장 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.
- 3. "정책연구용역비"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다.

「전문개정 2020. 2. 28<u>〕</u>

- 제3조(의원연구단체의 구성)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용인시 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으로 구성하고,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(이하 "의원연구단체 대표자"라 한다)를 둔다. 〈개정 2018. 5. 14〉
  -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.
- 제4조(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) ① 용인시의회 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

한다)를 둔다.

- ②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(이하 "의회운영위원회"라 한다)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. 〈개정 2020. 2. 28〉
- ③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,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장과 간사는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제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, 의장의 자 문에 응한다. 〈개정 2020. 2. 28〉
  - 1.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
  - 2. 연구단체 활동계획과 연구과제 조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- 3.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
  - 4.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, 사업비, 사업기간의 적정성
  - 5.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- 6.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제6조(위원회 회의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  -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 다만,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.
  -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.
  -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7조(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)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,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작성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지방의회의원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 등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등록할 수 있다. 〈개정 2011. 11. 3, 2020. 2. 28〉

-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의원 변경신청서에 의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0. 2. 28〉
- 제8조(등록취소)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  - 1.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
  - 2. 연구단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- 제9조(연구활동비 등 지원)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. 〈개정 2020. 2. 28〉
  - ②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. 〈개정 2020. 2. 28〉 [제목개정 2020. 2. 28]
- 제9조의2(정책연구용역비 집행 및 관리) ①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.
  - ② 정책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착수·중간·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20. 2. 28]
- 제10조(공동참여)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·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.
- 제11조(연구활동계획의 변경)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 〈개정 2020. 2. 28〉
  -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0. 2. 28〉
  - ③ 의장은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.
- 제12조(연구단체 결과보고서의 제출)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

####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

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0. 2. 28〉

② 연구단체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, 연구결과는 「의원연구사례집」으로 발간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1. 11. 3 조례 제1190호,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생략

②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1항 중 "총선거"를 "지방선거"로 한다.

부칙〈2018. 5. 14 조례 제1823호〉

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0. 2. 28 조례 제2011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「별지 제1호서식〕

#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

- 1. 연구단체명:
- 2. 대 표 자 :
- 3. 연구 목적 :
- 4. 구성원 인적사항

구 분	성 명	소속 상임위원회	서명・날인	비고
희 장 간 사 회 원				

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위 연구단체 대표자

날인

#### [별지 제2호서식] 〈개정 2020. 2. 28〉

###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

구 분	주	슈	내	<u>a</u>
연구단체명				
연구내용	연구과제			
[ 긴 ] 네 중	연구목적			
연 구 방 법				
및		「붙	임」	
세 부 계 획				
연 구				
활 동 비	총 액	금		원
•				
정 책 연 구	세부산출내역		「붙	임」
용 역 비				
기 타 사 항				

붙임: 연구단체 활동 세부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· 정책연구용역비 세부산출내역서 1부

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활 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위 연구단체 대표자 날인

[별지 제3호서식] 〈종전 별지 제4호서식에서 이동 2020. 2. 28〉

# 의원연구단체 의원 변경신청서

연 구 단	<u>+</u> 체	명	
변동의원	당	초	의원
진하기현	변	경	의원
변 동	일	자	
변 동	사	Ŷ	
н]		고	

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의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위 연구단체 대표자 날인

[별지 제4호서식] 〈종전 별지 제5호서식에서 이동 및 개정 2020. 2. 28〉

##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

연	구	단	체	명				
	연 구	당 초	연구:	과 제				
연			연구	목 적				
내	구용	버거	연구:	과 제				
		변경	연구	목 적				
연 구	활동	계획	변경/	사 유				
연 구	활동	변경	세부	계 획		「붙	임」	
연	구	당 초	총	액	금			원
활 등	를 비	で全	산출기	내 역		「붙	임」	
	연구	변 경	총	액	금			원
용	용 역 비		산출기	내 역		「붙	임」	
기	E	}	사	항				

붙임: 연구단체 활동 변경 세부계획서 1부

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위 연구단체 대표자 날인

[별지 제5호서식] 〈종전 별지 제6호서식에서 이동 2020. 2. 28〉

#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서

구 분	주 요 내 용
연구단체명	
대 표 자	
연구과제명	
연 구 방 법	
연 구 목 적	
연 구 내 용 요 약	
기 타 사 항	

붙임: 연구단체 결과보고서 1부

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 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위 연구단체 대표 날인